

제292회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2025. 12. 5. (금)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 검 토 보 고 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연 의원 대표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오세진]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검토경위

- 발 의 자: 박수연 의원 외 5명

※ (공동발의자) 김재원, 이관호, 김영근, 김오현, 김진구 의원

- 발의일자: 2025. 11. 11.

- 심사일자: 2025. 12. 5.

## 2.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2023. 12월)에 의거 포상의 제한과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 제고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포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포상제한 신설(안 제10조)
- 포상취소 신설(안 제11조)

## 4. 관련법령 등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및 「정부 표창 규정」
- (참고1) 인천 군·구 의회 포상 규정 현황
- (참고2) 인천 군·구 의회 포상 규정 세부내용

## 5. 검토의견

### ○ 개정 필요성 검토

- 포상대상자 적격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권고」(2023. 12.)에 따라 포상 제한 및 취소 규정을 마련하여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을 방지하고,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 조문 검토

- 안 제10조(포상제한)는 포상의 영예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당연히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음주운전자, 성범죄자 등이 포상을 받을 우려가 있어,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해 포상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10조제1호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안 제10조제2호는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공무원 포상 추천제한 규정<sup>1)</sup>을 준용하여 포상제한 기준의 통일성을 유지하였음.

- 안 제11조(포상취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을 취소하고, 부상 등을 환수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명문화하는 것임.

1) 행정안전부 「2024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p.29 III.포상기준, 3 공무원 포상, 다. 추천제한,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포상제도의 운영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물의가 없는 적격자에게 포상이 수여되도록 함으로써 포상의 영예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충실하며, 관련 상위 규정 및 지침을 적절히 준용하고 있어 법적·제도적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됨.

## 관계법령 발췌사항

###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올라 있는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 9년

나. 정직 : 7년

다. 감봉 : 5년

라. 견책 : 3년

< 이하 생략 >

### □ 행정안전부 「2024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p.29 일부 발췌)

#### Ⅲ. 포상기준

##### 3. 공무원 포상

###### 다. 추천제한

######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참고1**

**인천 군·구 의회 포상 규정 현황**

구 분	관련 조례	제한 및 취소 규정 유무	비고(개정일)
중 구	포상 조례 제15조(포상의제한), 제17조(포상취소)	○	2024.9.30
동 구	포상 조례 제10조(포상제한) 제11조(포상취소)	○	2024.9.25
미추홀구	포상 조례	X	
연수구	포상 조례 제11조(포상제한) 제16조(포상의취소)	○	2024.12.23
남동구	표창 조례	X	
부평구	포상 조례 제11조의2(포상제한) 제11조의3(포상취소)	○	2025.7.7
계양구	의회 운영 조례 제40조의2(포상제한), 제53조의2 (포상취소)	○	2023.12.15
서구	포상 조례	X	
강화군	포상 조례	X	
옹진군	포상 규칙	X	

※ 조항별 상세내용 첨부(참조2)

## 참고2

## 인천 군·구 의회 포상 규정 세부내용

구분	포상제한	포상취소
중 구	<b>제15조(포상의제한)</b> 1.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사람 2. 공사(公私)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사람 3.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4.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b>제17조(포상취소)</b> 1. 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4.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동 구	<b>제10조(포상제한)</b>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그 밖에 의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	<b>제11조(포상취소)</b>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연 수 구	<b>제11조(포상제한)</b>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 비위(非違)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3.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4. 그 밖에 의장이 포상 계획으로 정하는 자	<b>제16조(포상의취소)</b>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부 평 구	<b>제11조의2(포상제한)</b>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견책·불문경고 처분이 말소되었거나 감봉·중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4.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5. 그 밖에 의장이 포상계획에 정하는 자	<b>제11조의3(포상취소)</b>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이 조례 및 의장이 정하는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계 양 구	<b>제40조의2(포상제한)</b> 1. 수공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자 4. 지방세 등이 체납 중인 자 5. 성범죄 및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받은 자 6. 공사 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은 자	<b>제53조의2(포상취소)</b>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사람이 포상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